

[서식 예]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

즉시항고장

사 건 2000카기00 법관기피

항 고 인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항고인은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 손해배상(기)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○○카기○○호로 판사 □□□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○ ○. ○.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,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 송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.

원 결정의 표시

주문 : 이 사건 기피신청은 기각한다.

(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: 20○○. ○. ○.)

항 고 취 지

- 1. 원결정을 취소한다.
- 2.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호 손해배상(기)사건에 관하여 판사 □□□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

항 고 이 유

항고인은 피고 ◇◇◇를 상대로 ○○지방법원에 손해배상(기)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, 같은 사건을 같은 법원 판사 □□□가 심리하여 왔으나 위 법관은 피고의 친형과 절친한 친구 사이고 또한 피고의 고향 선배로서 위 판사가 이사건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, 같은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. 그러나 항고인은 기각 결정에 불복하므로 본 항고를 제기합니다.

소 명 방 법

1. 향우회명부사본

1통

첨 부 서 류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항고인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고등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원심법원	제출기간	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 로부터 1주 이내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47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(민사소송법 제442조) · 즉시항고의 각하·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재항고하여야 함(민사소송법 제444조)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법원 >> 법원직원의 제척, 기피, 회피